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17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한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¹⁾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감면 특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이만회의원안은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과 재산세가 감면되는 취득기준일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임.

최근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